

대전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나12116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나1211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3가단22336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권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글로리, 담당변호사 김민희

변론종결 2024. 9. 12.

판결선고 2024. 10. 17.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3가단22336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685,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2024. 10. 17.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3,794,000원 및 그중 209,794,000원에 대하여 202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0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79,1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24. 5. 28. 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채권자 F, E의 청구채권액 25,179,149원(= F의 압류 및 전부명령 추가 청구채권액 13,891,478원 + E의 압류 및 추심명령 추가 청구채권액 11,287,671원)을 추가로 청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선행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 ·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제11행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20행의 “있다” 오른쪽에 “(이하 위 채권자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피고가 위 각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채권자 F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청구금액 108,685,478원)으로 삼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타채16857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0. 28.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소정의 요양기관으로서 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청구하는 요양급여 비용(진찰, 검사, 치료, 처치, 수술, 약제비) 청구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채권(건강보험료 지급채권)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은 2022. 11. 2.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된 뒤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라. 한편, 채권자 E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청구금액 61,287,671원)으로 삼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타채16858호로 J조합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1. 3. 원고의 J조합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 제3면 제5행 밑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자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원고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액 합계 478,964,149원(= 채권자 E에 대한 61,287,671원 채무 + 채권자 F에 대한 108,685,478원 채무 + 채권자 G에 대한 4,000만 원 채무 + 채권자 H에 대한 2억 400만 원 채무 + 채권자 I에 대한 6,500만 원 채무) 중 453,7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원고를 면책시켰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관계

1) 관련 법리

가)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으로서 모든 양도재산을 일괄하여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그 이전절차는 상속이나 회사 합병의 경우와 달리 포괄적 이전 내지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 내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22025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의 효력밖에 갖지 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한편,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영업상 채무를 양도하기 위하여는 개별적으로 이전 내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채권자들이 피고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거나 병존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에 관한 이행인수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채무자가 약정대로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직 위 채무에 대하여 이행청구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곧바로 채무자에 대하여 인수하기로 한 채무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인수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등 참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고(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이는 집행채권자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상응하여 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이 변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이는 집행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적인 출연을 한 것과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어 집행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88234 판결 참조). 이러한 효력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나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채권자 F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 F가 청구채권을 108,685,478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2. 11. 2. 송달되어 같은 달 15. 확정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은, 확정된 이 사건 전부명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된 2022. 11. 2.로 소급하여 청구금액 108,685,478원의 범위에서 채권자 F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원고가 채권자 F에 대한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적인 출연을 한 것과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어, 채권자 F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채권자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상당액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소멸한 채무를 이중으로 변제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채권자 F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자 F에 대한 채무를 면책케 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채권자 E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권자 E이 원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기 전 피고는 채권자 E에게 2022. 4. 4. 합계 2,130만 원, 같은 달 25. 290만 원, 같은 달 28. 3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② 채권자 E은 '피고가 채권자 E에게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채권자 E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에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상환받아 원고에게 청구할 금액은 없다'는 내용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 ③ 달리 채권자 E이 제3채무자인 J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고 불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권자 E에 대한 채무를 면책케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의 채권자 G, H, I에 대한 채무의 경우, 위 채권자들이 그 이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곧바로 피고에게 인수하기로 한 채무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자 F의 청구채권액 108,685,4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봉길, 판사 장정태, 판사 이해성